

대구지방법원 2022. 6. 14 선고 2021가단14146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구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임성우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

변 론 종 결 2022. 5. 17.

판 결 선 고 2022. 6. 14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B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와 피고 사이에 2021. 8. 24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위 B에게 대구지법 등기국 2021. 8. 25. 접수 제1229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 사실

별지 ‘청구원인’, ‘채무초과상태’ 각 기재와 같다.

2. 판단

가. 갑 1-1 내지 갑 9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C기관, D조합,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위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B에게 2019. 11. 5. 1억 원을 이자 연 24%, 변제기 2021. 11. 5.로 정하여 대여하였고, 2020. 2. 13. 3,400만 원을 이자 연 24%, 변제기 2020. 12. 31.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, 2021. 9. 9. 1,500만 원을 이자 월 1%, 변제기 2021. 11. 5.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, B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조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것이어서 선의라고 항변하나, [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.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.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,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).]는 법리에 비추어 이

사건을 살피건대, 을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성금석

별지